

의안번호	2206981
의 퇴 인	김성원의원
회 답 일	2025.2.10.
추계번호	25D6492
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의2(조직)	-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중앙회를 두고, 시·도별, 시·군·구별 협의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제3조의2(조세감면 등)	-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-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의2(조직)	미대상: 해당 조문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1중앙회, 17개 시·도협의회, 233개 시·군·구 협의회, 3,197개 읍·면·동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음
2	안 제3조의2(조세감면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세감면 등(안 제3조의2 신설)
 - 조세감면 조항(안 제4조의2)을 신설하여,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,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
 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및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조세감면 규정 존재

- 다만, 구체적인 조세감면과 과세특례의 내용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이에 따른 조세감면 및 기부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현 시점에서 추계하기 곤란함

※ [참고자료]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일반 현황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[참고자료]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일반 현황

- (연혁) '89. 4. 1.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창립
 - 비영리법인 허가('97. 3. 12. / 내무부)
- (지원근거) 『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』 ('91.12.31.제정)
- (설립목적) 진실·질서·화합의 이념으로 자율적·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진국민의식 함양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
- (조직) 1중앙회, 17개 시·도협의회, 233개 시·군·구 협의회, 3,197개 읍·면·동 위원회
- (회원) 80만여명
- (예산) 11억 원(국비사업 1.89)

자료: 행정안전부